

소셜벤처기업은 다음의 내용과 같이 기술보증기금이 판별하며, 판별표는 향후 개정될 수 있음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는 창업 후 2개월이 속한 월말까지 아래의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충족**  
 하여야 한다. (판별기준 미충족 시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자금 환수조치)

- 1) 판별원칙 : ①**사회성 판별표**와 ②**혁신성장성 판별표**를 적용하여 판별하여, 판별표에 의한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분류한다.  
 2) 상기 판별원칙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sup>주1)</sup>에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인정하는 경우 소셜벤처기업으로 분류한다.  
 \* 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업력 3년 이상 소셜벤처기업 대표를 40% 이상 포함)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 관련 기타 사항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함.

①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또는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100점	
2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3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70점	판별근기입력
4	비콕(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50점	
5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sup>1)</sup> 되어 있고, 추진 <sup>2)</sup> 중인 기업	50점	정관 외 기타 증빙 <sup>3)</sup> 은 50%만 인정
6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sup>2)</sup> 하고 있는 기업	50점	
7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sup>2)</sup> 하고 있는 기업	20점	
8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 <sup>4)</sup> 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20점	
9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 <sup>4)</sup> 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조직)이 창업한 기업	20점	
10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	10점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2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5점	
13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5점	
점수 합계			점

1) 예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2) 관련 증빙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증빙없이 점수 부여)

구분	3항 판별근기 입력
◆ 사회적 문제 <sup>주1)</sup> 해결	제품·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간략히 기술
◆ 제품·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가치창출이 의도 되었는지?	근기를 간략히 기술
◆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사업계획서, 특허 공개전문 <sup>주2)</sup> , R&D 계획서, 실제 제품 확인 등을 통해 평가자가 직접 확인)

주1)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현저하게 다수가 고통 받고 있는 상태

주2) 통상적으로 특허 공개전문에 본 특허를 발명하게 된 배경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술함

## ② 혁신성장성 판별표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2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5%)	100점	
3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4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 <sup>5)</sup> 의 본계정에서 3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50점	
5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 <sup>6)</sup> 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50점	
6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1건 40점, 2건부터 건당 5점 추가
7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sup>7)</sup> 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 <sup>8)</sup> 으로 확인	40점	
8	최근 5년 이내 세계적 규모의 창업경진대회 <sup>9)</sup> 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40점	
9	법령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sup>10)</sup> 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0점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10점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주관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회 <sup>11)</sup> 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20점	
12	기업(또는 재단) <sup>4)</sup> 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분투자 또는 지원을 받은 기업	20점	
1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 <sup>12)</sup> 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20점	
14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점수 합계		점	

3) 정관 외 미션선언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4)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민간 조직에 해당함

5) 임팩트금융국가민간자문위원회(NAB),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 등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투자기관 단체의 회원일 것

6)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인증(I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7)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연구개발비

8)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 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

9) 글로벌 소셜벤처기업 경진대회(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매스챌린지(Mass Challenge),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 갯인더링(Get In the Ring), GSEA(Global Student Entrepreneur Award) 등 1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창업경진대회를 말함.

10) 창업기획사(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11) K-스타트업(창업리그, 학생리그, 국방리그, 글로벌리그) 또는 舊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본선이상 입상자, 지식재산 정보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특별상 이상 수상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등

12) “혁신성장 공동기준”이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한 것임.